[양식 제6호]

파 양 신 고 서 (년 월 일)

※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, 선 목은 해당번호에 "○"으로 표시하여 주 바랍니다.

구 분		양 부									양 모							
① 양 친	성명	한글	(성)	/ (1	명)	본(한	자)				한글	(성)	/ (1			본(한>	자)	
		한자	(성)	/ (1	명)	출생연 ⁻	월일				한자	(성)	/ (፲		, after	출생연월	일일	
		주민	등록	번호			-				주민	등록반	호				_	
	등 록 기 준 지																	
	주소																	
② 양 자	성명	한글	(성)	/	(명)				본(한)	자)						주민]등	록번호
	0 0	한자	(성)	/	(명)				출생연원	월일							-	-
	등록기	준지																
	주 :	소																
③양자의 친생부모		부성				등록기준지												
		'	병			주민등				_								
신/	생주도	모	성 명				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											
(4	기타사	항					Ti	10	구인.	Y-								
	 재판확정'				년		월		일					법	원명	년 명		
⑥동의자 (성년후견인		()							(1) Y	는 사	명	주민등	록번	ই			_	_
⑦ 신 고 인							(① 또는 A			 전 화						
	양부										- B))	이메일						
	41 -											전 화						
	양모						① 또는		는 서	1명 —	이메일							
	0F-2J								an rrt		1111	전 화						
	양자		① 또는							亡^	이메일							
	11人	ᆀ기.	zl ઉ	引入。	ol 사r	·1] 담}					<u></u>		또는 서명		전	화		
	11:1-	^I / /	`\	<u> </u>	의 상대방									~11-3	ो	메일		
8	제출인		성 명								-민등록번호						_	

[※]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,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
★야 ★대한법률구조공단

작성 방법

- ※ 등록기준지: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.
- ※ 주민등록번호: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(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)를 기재합니다.
- ①란 및 ②란: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 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
- ④란: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.
- ⑤란: 재판상 파양의 경우 재판확정일자 및 법원명을 기재합니다.
- ⑥란: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협의상 파양을 할 경우 기재합니다.[단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]
- ①란: 양자란은 파양을 하는 양자가 기명날인(또는 서명)하며,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 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도 해당항목번호에 "○"으로 표시한 후 기명날인(또는 서명)합니다.
- ⑨란: 제출자(신고인 여부 불문)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[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]

첨부서류

※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.

- 1. 파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.
- 2. 재판상 파양의 경우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.
- 3. 파양의 조정(화해)성립의 경우 조정(화해)조서등본 및 그 송달증명서 각 1부.
- 4.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협의상 파양을 할 경우 성년후견인의 동의서(다만 동의한 성년후견인이 "동의자"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 는 날인한 때에는 제외)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
- 5.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
 - 한국 방식에 의한 파양: 협의파양의 경우 국적 증명 서면(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) 원본 재판파양의 경우 국적 증명 서면(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) 사본
 - 외국 방식에 의한 파양: 파양증서 등본 1부 및 국적 증명 서면(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) 사본 1부
- 6. 신분확인[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]
 - ① 재판상 파양(증서등본에 의한 파양 포함)
 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: 신분증명서
 -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
 - 우편제출의 경우 :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
 - ※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6항의 ①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.
 - ② 협의파양의 경우
 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: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
 - 신고인 불출석, 제출인 출석의 경우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 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(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 한 경우 서명공증,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)
 - 우편제출의 경우 :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(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 공증,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)